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3. 9.(화) 14:3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4시 32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자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7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진행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21-08-027)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소라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직무대리

-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의결 주문입니다. “(주)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 네이버 주식회사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의3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한다”입니다. <2> 제안 이유입니다. (주)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 네이버 주식회사 등 3개 법인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실시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3> 주요 경과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토스·카카오·네이버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청기관 일반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 23일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접수하였고, 9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기관 대상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1월 27일 신청기관에 심사결과를 통보 및 의견청취하였고,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심사위원 추가검토 및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4> 심사내용입니다. 심사 방법은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심사대상 법인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의 개발·제공·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보통신망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및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물리적·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계획, 설비규모의 적정성,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 총 92개 항목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5> 심사결과입니다. 토스, 카카오, 네이버 모두 심사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토스의 경우 본인확인 시스템은 별도로 구축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 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하여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대체수단 발급 설비를 미보유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한 설비’ 부문에서 부적합 판단을 받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의 경우 기존 비실명 계정에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하나, 대체 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대체수단 탈취 및 해킹 등 부정

이용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부문에서 부적합 판단을 하였습니다. <6> 신청기관 의견입니다. 토스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항은 심사기간 중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다는 의견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의 경우 초기 계정 가입은 비실명으로 이루어지나 이후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인증 및 계좌점유인증 이후 실명전환되므로 유일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7> 검토 의견입니다. 토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하위법령 상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는다면 본인확인기관으로 볼 수 없고 이미 심사가 시작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 등을 수정할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카카오, 네이버의 경우 최초 비실명 계정 소유자와 본인확인 명의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여전히 검증할 수 없어, 이로 인한 계정탈취 및 명의도용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추가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적합 사항이 도출된 3개 신청법인에 대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8>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시면 금년 3월에 신청기관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안건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하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정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 가운데 그런 사업을 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에게 국가기관인 방통위가 허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사업이기 때문에 재량적 판단이 폭넓게 허가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방통위의 재량적 권한이 상당히 폭넓게 허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토스의 경우에 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의 결과가 나쁘게 나온 이유가 대체수단 발급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본인인증기관의 핵심이고 기본적인 기능인데 심사 응모 시 이런 기능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심사에 응했다는 점이 결격사유가 되어서 허가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스의 입장에서는 조건부 허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부적합한 판정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인정사항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과거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조건부로 본인확인기관을 지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그것은 부적합 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적합하긴 하지만 경미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이행점검을 통해 지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네이버와 카카오와 관련해서도 토스의 경우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생각해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확인이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나다' 바로 유일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계정 가입 시 네이버나 카카오는 비실명으로 계정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실명으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어떤 지점에서 해커들에게 탈취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우리의 편의성을 중시하다가 안전성을 잊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관련해서도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와 관련해서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면 이번의 경우처럼 국가기관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끝으로 이번 심사 결과가 발표되면 비대면 사회에 방통위가 대면 확인수단을 너무 고집하고

있다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심사 기준에서 본인확인기관의 신원 확인 방법을 그렇다고 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면확인이 아니라고 해도 ‘내가 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제3의 방법을 그런 기술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그 이후에 신청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사무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사무처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3개사 모두 한 가지 이상의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들 3개 사업자들이 우리 ICT 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 포털사업자이거나 유니콘 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 활성화를 이번 심사가 오히려 가로 막는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있어서 이용자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서비스 이용 여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해서 신청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안정적으로 개발·제공·관리 할 수 있는지 엄밀히 따져본 후 규정된 요건을 제대로 갖춘 신청자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사 결과 지적된 부적합 사항을 보면 대체수단 직접 생성 여부나 실제 명의자 검증과 관련된 사안으로 92개 전체 심사항목 중에서 본인확인서비스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특히 핵심적인 사안들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무처안과 같이 3개사에 대한 본인 확인기관 지정 거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원안 동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코로나19 상황의 지속은 우리 일상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은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로 온라인 상 본인확인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이번에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와 유수의 펀테크업체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임에 따라서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보안성이 중요합니다. 물론 최근 보안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는 보수적인 금융권에서조차 민간 인증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고, 창고 없는 금융서비스 도입 등 비대면 인증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신청한 기관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비대면 본인확인서비스를 준비하여 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인확인기관 지정에서는 이런 트렌드와 서비스의 편의성 및 혁신성 등도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최소화하려는 본인확인 제도의 취지, 서비스의 안전성, 보안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라는 목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 그리고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향후 비대면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존 통신 및 인터넷사업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국내 기업들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사무처에서는 서비스 수요와 안정성을 고려한 적정 기관 수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심사 절차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궁극적으로는 법 취지와 사회 기술 환경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본인확인기관 정책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현 부위원장

- 본인확인이 온라인 서비스나 금융산업의 가입, 변경에 쓰이고 있으며,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면 민감한 정보 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자를 지정할 때는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부적합 사항들의 중대성을 보건대 본인확인 서비스를 하기에는 미흡할 것으로 보이므로 지정 거부의 사무처 의견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일치된 의견으로 사무처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결정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동안 검증하고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이용자 편익과 서비스 혁신을 바라는 요구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것인 만큼 편익보다는 보호와 안전의 가치를 보다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는데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첨언한다면 본인확인기관이 개인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인 만큼 목적 이외의 방식으로 그런 식별정보들이 활용할 여지가 생기면 곤란하고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현행 법령과 심사기준상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이러한 조건들을 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충분히 살펴봐서 보완할 부분은 혹시 없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에 의해서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기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 상으로 2021년 제8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 46분 폐회】